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0월 20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10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이 2021. 12. 21. 개정 2022. 6. 22. 시행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이 2022. 6. 21. 개정 2022. 6. 22.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
 - 목적 조문의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- 나. 검토의견
 -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임

2) 주요내용

- 목적 조문의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1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